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종합계획 수립 시 귀농어업인 등의 의견 청취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34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종합계획 등 수립 시 귀농어업인 등의 의견 청취 의무화	3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4
나. 제21대 및 제22대 국회 심사 경과	4
다. 검토의견	5
2.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 제공	11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1
나. 검토의견	12
3.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우대조치	15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6
나. 검토의견	17
[참고자료]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2. 27.
3. 회 부 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및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 확대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

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및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 다.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도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에서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종합계획 등 수립 시 귀농어업인 등의 의견 청취 의무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한 경우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조의2(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청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u> <u>1.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u> <u>2. 제6조에 따라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이나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행정절차법」 제52조¹⁾에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나. 제21대 및 제22대 국회 심사경과

제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849호, 안호영의원안)」이 발의되어(2023. 9. 27.) 전체회의에 상정,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2023. 11. 23.) 이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제22대 국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안호영의원안(의안번호 제2205820호)과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문대림의원안(의안번호 제2207008호)이 각각 발의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1)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① 행정청은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²⁾과 귀촌인³⁾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6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을 바탕으로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주기의 종합계획 및 시·도, 시·군·구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계획 결정 과정에 정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정책대상자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종합계획 수립 시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시·도, 시·군·구계획 수립 시 “시·도 또는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주로 생산자·소비자 단체 또는 농어업에 활발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위원 구성]

위원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 심의위원회	시·도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시·도 수산업·어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위원 자격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어촌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명 이내 가. 수산업·어촌

위원회	중앙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중앙 수산업·어촌정책 심의위원회	시·도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시·도 수산업·어촌정책 심의위원회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어촌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재구성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3월 제2차(‘22~’26) 종합계획⁴⁾ 수립 과정에서도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주요 시·군 귀농귀촌인 단체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바 있음.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내역]

- 간담회(‘21.3.31, 대면 회의)
 - 참석: 농식품부,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시군 귀농귀촌인 단체*
 - * 홍천·단양·김제·순천·합천 귀농귀촌인 협의회, 홍성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 주요 의견
 - 민간을 활용한 현장 밀착 지원체계 구축
 - 귀촌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정책 추진
 - 생계 목적의 ‘귀농’, 생활 목적의 ‘귀촌’으로 구분, 정책 차별화 등

4) <참고자료1> 제2차 종합계획 주요내용

- 귀농귀촌 정책 포럼(4회, '21.3.31~8.23, 대면 회의)
 - 참석: 농식품부,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통계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충남연구원, (학계) 충북대, 전북대, (지자체) 전북도, 완주군, (단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 주요 의견
 - 커뮤니티 지원,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
 - 귀촌 지원 강화, 귀촌인 커리어·재능 활용
 - 정주 환경 개선, 농촌지역 생활 SOC, 타 부처 정책 연계 등
- ☞ **간담회 및 정책 포럼 논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
 -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22.2.10, 서면)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심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12.24. 제출)

또한,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국민의견 청취에 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만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수립 시 필수적으로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할 구체적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더욱이 개정안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계획 등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반영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u>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u> 하며, <u>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u> 한다.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한편, 계획의 내용 중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계획 수립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현행법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2.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 제공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u><신설></u>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있으나,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가 아닌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함.

나. 검토의견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0~2021년 증가 추세에 있던 귀농어·귀촌 가구수가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19년 귀농어·귀촌 가구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최근 5년간(2019~2023년) 귀농어·귀촌 가구 추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귀농가구 (전년비)	11,422 (△4.5%)	12,489 (9.3%)	14,347 (14.9%)	12,411 (△13.5%)	10,307 (17.0%)
귀어가구 (전년비)	904 (△1.4%)	897 (△0.8%)	1,135 (26.5%)	951 (△16.2%)	716 (△26.2%)
귀촌가구 (전년비)	317,660 (△3.3%)	345,205 (8.7%)	363,397 (5.3%)	318,769 (△12.3%)	306,441 (△3.9%)

※ 자료: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 2024. 6. 24.) 재구성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의 활력과 인구 유입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⁵⁾ 가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업인·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2021~2023년)와 지자체(2024년~)⁶⁾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실행 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5) <참고자료2>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 현황

6)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 여건이 성숙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사업을 폐지함.

을 추진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도 정착 초기 주거문제 해소 및 체류형 기술교육·체험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을 조성하는 “어촌에서 살아가기”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농촌에서 살아가기(2021~2023년) 사업 개요 및 성과]

- (목적) 귀농귀촌 실행 전에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 (지원) 참가자에게 최장 6개월간 주거·연수프로그램 제공, 일자리 연계, 운영마을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센티브 지원
 - * 참가자가 월 15일간의 필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연수비(월30만원) 지급
- (유형)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 참여형*(40세 미만 청년)
 - *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 제공(유휴시설 활용 사업 운영, 지역의 문화 이벤트 기획 등)
- (성과) : 도입 첫째 해 88개 시군, 104개 마을에서 '23년 100개 시군, 126개 마을로 사업 증가, 참가자·지역주민 모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구분	시군	운영마을				참가자		전입 실적	
		계	귀농	귀촌	프로젝트	가구	명	가구(전입률)	명
'21	88	104	37	59	8	649	816	73 (11.2%)	88
'22	95	119	36	76	7	882	1,140	125 (14.2%)	148
'23	100	126	38	83	5	832	1,081	140 (16.8%)	185

- ❖ '23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설문조사 결과(참가자 596명, 운영마을 105곳, '23.10)
 - 참가자, 운영마을 모두 귀농귀촌에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 참가자 성과 : 지역 정보 습득(51%) > 지역 이해(24) > 인적 네트워크 형성(19) 순
 - 운영마을 성과 : 지역 활력회복(39%) · 인구유입(31) > 마을수익 창출(18) > 일손부족 해결(7) 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2025. 4. 8.)

[어촌에서 살아가기 사업 개요]

□ 배경 및 문제점

- (배경) 어가인구는 '22년 9.6만명으로 '17년(12.8만명) 대비 25% 감소, 어가수는 '22년 4.5만호로 '17년(5.6만호) 대비 19.6% 감소 등 '어촌소멸' 위기 대두
- (문제점) 최근 도시출신의 귀어인이 '21년 대비 '22년 3.6%증가(25.8%→29.4%)* 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를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 중
* (근거) '21년 및 '22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 사업 개요

- (목적) 어촌정착 초기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체류형 기술교육·체험을 위한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
- (규모) 총 300개소 조성(1년차 시범사업 6개소, 이후 연간 약 90개소)
* 귀어인의 집(누적, 개소): ('22) 6 → ('23) 96 → ('24) 186 → ('25) 276 → ('26) 300
- (지원조건 / 시행주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50%, 지방비 50%) / 지자체
- (조성방안) 어항 배후부지 점용, 어촌계 부지 장기임차 등을 통해 이동식 조립 주택을 구입하여 '귀어인의 집' 운영
- (운영방안) 귀어귀촌 맞춤형 교육, 다양한 어촌정보, 현지인과의 소통 등 지원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연계 추진

□ 지원형태

- 이동식 주택, 빈집 리모델링, 노후 주택 철거 등 최대 50백만원 지원

구분	내용
이동식 주택	- 어항 배후부지, 어촌계 부지 등 대지를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지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어인의 집으로 운영할 경우
리모델링	- 개인·어촌계 등 소유하는 주택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빈집의 소유주와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 운영	- 귀어인의 집 이용 수요가 많은 경우 마을에 있는 주택(어촌체험휴양마을 포함)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하고, 임대 운영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 자료: 해양수산부, “2025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권”, p. 5230

이와 같은 사업은 귀농어·귀촌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정착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예산 및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귀농어·귀촌 체험 기회 제공 사업을 귀농어·귀촌 홍보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 그 근거를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등과 함께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⁷⁾에 신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법 체계적 측면에서 볼 때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에서 정착 지원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특수상황지역”뿐 아니라 같은 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해서도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할 때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

7)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u>특수상황지역</u>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 -----<u>특수</u> <u>상황지역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대해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우대조치가 가능함.

다만, 인구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안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타 법령⁸⁾ 정비 이후 “인구감소지역”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대체하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별도 의견 없음.

8)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431호)이 법안소위에 회부(2024. 11. 12.)되어 있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황지역⁹⁾에 해당하는 접경지역(15개 시·군), 개발대상섬(21개 시·군·구 188개 섬), 새만금사업지역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상황지역 현황]

• 접경지역 15개 시·군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1조 「접경지역」 15개 시·군

- 인천(2) : 강화군·옹진군
- 경기(7) :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시·연천군·포천군
- 강원(6)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 섬지역 21개 시·군·구 188개 섬

- 섬발전촉진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지정섬」 371개 섬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183개 섬은 제외

- 인천(32) : 중구(2), 강화군(8), 옹진군(21), 서구(1)
- 경기(4) : 안산시(2), 화성시(2)
- 충남(21) : 보령군(13), 서산시(4), 홍성군(1), 당진군(3), 태안군(2)
- 전북(16) : 군산시(16)
- 전남(48) : 목포시(5), 여수시(42), 무안군(1)
- 경남(57) : 통영시(38), 사천시(6), 거제시(8), 창원시(5)
- 제주(8) : 제주시(6), 서귀포시(2)

※ 자료: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https://www.mois.go.kr/frt/sub/a06/b06/specialAreaDev/screen.do>>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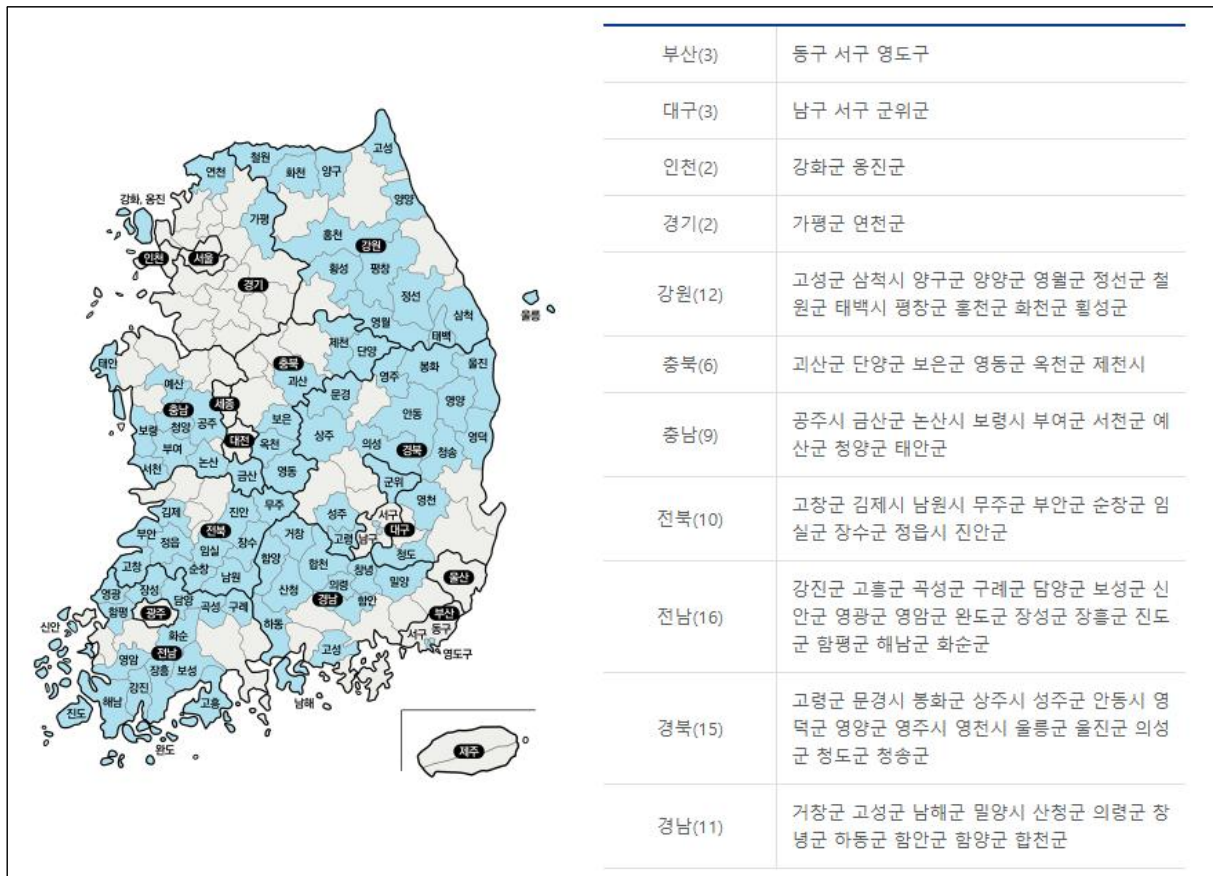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상 인구감소지역¹⁰⁾ 또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어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 지역에 포함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 시·군·구)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개정안에 따른 우대조치 대상의 비중을 살펴보면,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읍·면) 중 인구감소지역은 62.5%에 해당하고, 2023년 기준 전국 귀농·귀촌 가구(귀어가구는 미포함)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한 가구의 비율은 28.9%임.

10)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어촌 지역(읍·면) 중 인구감소지역 비중]

구분	행정구역		
	시·군·구	읍·면	동
전국(A)	226	1,411	2,122
인구감소지역(B)	89	882	159
비중(B/A)	39.4%	62.5%	7.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 (2025. 4. 14.)

[2023년 귀농귀촌 가구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한 비중]

구분	귀농귀촌 가구		
	귀농	귀촌	계
전국(A)	10,307	306,441	316,748
인구감소지역(B)	6,519	85,028	91,547
비중(B/A)	63.2%	27.7%	2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 (2025. 4. 14.)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2023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감소된 인구의 90.4%는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농가 인구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귀농어·귀촌을 촉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010~2023년간 인구감소지역별 인구수 변화]

(단위: 명, %)

구분	2010(A)	2023(B)	증감(B-A)	증감률((B-A)/A)
전체인구(a)	4,698,512	4,168,841	△529,671	△11.3
농가인구(b)	1,392,843	914,085	△478,758	△34.4
b/a	29.6	21.9	90.4	-

※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4. 11.)

이에 개정안과 유사한 목적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창업 또는 주택마련 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세제상·금리상 우대조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우대조치는 없는 실정임.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구 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귀농인(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②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③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①귀어업인(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②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농업창업(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창업자금(사업대상자당 3억원 한도) ○주택구입 지원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융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연 1.5%)
2025년 예산	2025년 융자한도: 150,000백만원	2025년 예산: 11,629백만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2025. 4. 3.) 재구성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에 대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실행 의지와 계획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

참 고 자 료

비전과 목표

비전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젊어지는 귀촌

목표

체계적인 준비, 정착 지원 강화로 귀농소득·귀촌생활만족도 향상

귀농 5년차 평균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 : ('21) 88% → ('26)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향상 : ('21) 76.2% → ('26) 85%



5대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

1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 ❶ 도시 내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귀농귀촌 준비 지원
- ❷ 농촌 장기체류형 체험·교육 강화
- ❸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지원

2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❶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확대
- ❷ 지역 내 일자리 정보제공 확대
- ❸ 재능나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❹ 지역 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3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 ❶ 지역 내 생산체계 안착을 위한 정착 단계별 밀착 지원
- ❷ 청년 귀농인의 생활 안정 및 영농기반 마련
- ❸ 귀농인의 영농 외 소득 다각화 지원

4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 ❶ 농촌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공간 계획 제도화
- ❷ 중앙정부·지자체 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집중 지원
- ❸ 농촌 공간 정비를 통해 매력적인 삶터 조성
- ❹ 다양한 주거 선택지 제공

5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통합정보 제공

- ❶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❷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플랫폼 운영 효율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12.24. 제출)

참고2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2025 예산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70-407)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박람회 귀농귀촌실태조사 귀농귀촌종합센터운영 귀농귀촌유치지원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등 체계적인 사 전준비를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	7,232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정보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70-408)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구축·운영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에서 정 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 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1,640
농업자금이자보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8-30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 이차보전)	귀농 희망자 대상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 업·농촌 정착 유도	150,000 (융자한도)
어촌소멸대응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47-300)	귀어귀촌 종합센터 운영	귀어·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멘토링 등의 지 원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지 원	1,587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체험 후 귀 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하 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	150
	도시민 기술교육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 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 는 귀어학교 교육비를 지원 * 5~8주간 교육	1,120
청년어촌정착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47-363)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어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 청년인력 에게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 하기 위해 정착자금을 지원	3,074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 어업 일 자리, 어촌계 가입 등 패키지 지원	3,000
수산금융자금이자보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 3450-301)	어촌정착 지원자금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 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 * 최대 3.75억원, 연이율 1.5%	11,62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2025. 4. 3.)